

의안 번호	1717	<p>【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】</p>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심사보고서</h1>
----------	------	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1. 2. 18.(목)
- 나. 제출자 : 노세영 의원 등 10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4. 2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4. 14.(수)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# 가. 제안이유

-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(안 제3조~제4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(안 제5조~제6조)
-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실비지급(안 제7조~제8조)

#### 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
-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5조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」 제4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경희)

-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 저장하고,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함.

- 이러한 저장강박증은 거주지 안팎에 쌓아놓은 물건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하고 열악한 위생환경으로 본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과 이웃에게 고통을 주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음.
- 따라서,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하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존재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,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축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# **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# 큰 거 법 규

## 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
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- 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- 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産管理)
- 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- 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- 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- 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## 「사회보장기본법」

-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·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- 제23조(사회서비스 보장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, 사회참여,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
- 제4조(기본원칙)**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,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

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·투명·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·단체·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